



제 428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국관광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 >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30호)

2025. 8.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김상욱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2025. 3. 28.

다. 회 부 일: 2025. 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의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0만원인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안 제19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동일·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 과태료 상향

가. 개정안 요지

- 개정안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관광공사와 동일·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u>3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9조(과태료) ① ----- ----- ----- <u>-500만원</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한국관광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¹⁾ 이를 위반한 자

1) 「한국관광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동일 또는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을 두는 것은 자격자나 자격단체 또는 특수법인·단체의 권리와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자격자의 자격자 사칭이나 유사단체의 난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그런데, 한국조폐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유사한 다른 공공기관이 해당 기관의 설치 근거법에서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경우 이보다 높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동법의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됨.
- 따라서, 개정안은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을 맞추려는 것이며, 이를 통하여 민간업체가 한국관광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피해 등을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관련 입법례 >

법률명	조문내용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제17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국제공항 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5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교육방송 공사법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국토정보 공사법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법	제18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도로공사법	제21조(과태료) ① 제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조폐공사법	제23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조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국주택금융 공사법	제6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한국철도공사법	제20조(과태료) ①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을 맞추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과태료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7